

피고용인 대상 공고

노동법 2810.5 절

피고용인

피고용인 이름: _____

시작 날짜: _____

고용주

고용 주체인 고용주의 법정 이름: _____

고용 주체인 고용주는 인력파견 중개업체/사업체(예. 임시 서비스 중개업체; 직원 임대 회사; 또는

전문 고용주 조직[PEO])입니까? 예 아니오

기타 명칭의 고용 주체가 되는 고용주의 "명목상 사업" (해당할 경우):

고용 주체가 되는 고용주의 주된 사무소의 물리적 주소:

고용 주체가 되는 고용주의 우편 주소(위와 다를 경우):

고용 주체가 되는 고용주의 전화번호: _____

고용 주체가 되는 고용주가 인력파견 중개업체/사업체(위 네모에서 '예'에 체크한 경우)라면, 이 피고용인들은 어떤 조직을 위하여 일하고 있습니까:

명칭: _____

주된 사무소의 물리적 주소: _____

우편주소: _____

전화번호: _____

급여 정보

급여 요율(들): _____ 초과근무 수당 요율(들): _____

요율 단위(네모에 체크): 시간 교대 근무 일 주 월급 성과급 커미션

기타(자세히 적어주세요): _____

급여 요율(들)에 대한 서면 동의서가 있습니까? (네모에 체크) 예 아니오

'예'라고 했다면, 모든 급여 요율과 기준은 이 서면 동의서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아니오

수당이 있는 경우, 이것을 최저임금의 일부분으로써 청구(식대 혹은 기숙사 수당 포함):

(피고용인이 영수증 아래에 서명하여 승인하는 경우는 최저임금에 의한 식사 또는 기숙사 비용 공제를 위해 법에 따라 요구되는 고용주와 피고용인 사이의 "자발적 서면 동의"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발적 서면 동의는 모두 반드시 별도의 문서에 작성해야 근거가 됩니다.)

정규 급여일: _____

근로자 보상

건강보험 회사 명칭: _____
주소: _____
전화번호: _____
증권 번호: _____
 자가 보험(노동법 3700) 및 자가 보험 동의에 대한 인증 번호: _____

유급 병가

예외의 경우가 아니라면, 이 통지에 의해 식별되는 피고용인은 주법에 의한 유급 병가의 최저 요건을 지켜야 하며, 이 경우 피고용인은:

- 유급 병가를 적립하여, 연간 적립된 유급병가 가운데서 최대 5일 혹은 40시간 가운데 많은 쪽으로 요청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 유급 병가의 사용 또는 요청 때문에 해고 또는 보복을 받아서는 안 되며;
- 다음 각 호의 이유로 보복 또는 차별한 고용주에 대해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병가일의 요청 또는 사용,
 - 유급 병가일 권리 행사 시도,
 - 캘리포니아 노동법 1.5조 245절 이하의 내용 위반을 진술하는 불만 제기,
 - 이 조항을 위반하거나, 캘리포니아 노동법 1.5조 245절 이하에서 금지된 여하한 정책 또는 관행 또는 행동에 반하는 것으로 진술된 내용의 조사 또는 기소에 대한 협력.

다음 내용은 이 통지서에서 확인된 피고용인에게 적용됩니다: *(네모 한 곳에 체크)*

1. 노동법 §245 이하에서 규정한 최저 요건만 추구하는 유급 병가의 축적으로서, 고용주 정책의 다른 부분에서 유급 병가 축적과 사용에 관하여 추가로 혹은 별도로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2. 노동법 §246 요건에 의한 축적, 이월, 사용을 충족하거나 초과하는 고용주의 정책을 추구하는 유급 병가의 축적.
3. 고용주는 12개월 기간이 시작되는 연초에 유급 병가를 40시간 (또는 5일) 이상 부여합니다.
4. 피고용자는 노동법 §245.5에 의한 유급병가를 면제 혹은 부분 면제를 받습니다. (주 면제 혹은 면제의 하부 조항): _____

비상 또는 재해 휴업

피고용인이 일하게 될 카운티 한 곳 또는 여러 곳에 적용되는 주 또는 연방 단위의 비상사태 또는 재해선언이 고용된 첫날로부터 30일 이내의 이전 기간에 발령되어 고용 기간 동안 건강과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주 비상사태 혹은 재난선언과 이것이 건강과 안전에 미치는 영향)

수령의 승인

_____ (고용주 대리인의 정자 이름)	_____ (피고용인의 정자 이름)
_____ (고용주 대리인의 서명)	_____ (피고용인의 서명)
_____ (날짜)	_____ (날짜)

이 통지서에 대한 피고용인의 서명은 단지 수령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노동법 2810.5(b)조의 요건에 의하여, 고용주는 이 통지서에 있는 어떤 내용이라도 변경될 경우, 다음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로부터 달력기준 7일 이내에 귀하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a) 모든 변경이 노동법 226조의 내용을 준수하여 적시에 임금명세서에 반영되는 경우; (b) 모든 변경에 대한 통지로서 변경 이후 7일 이내에 법적 요건에 의한 다른 방식의 서면으로 제공된 경우.